

“밤에 아이 아파도 갈 병원 있어 든든” 엄마들 안도

공공심아어린이병원 문 연 광주기독병원 가보니

평일 30명·주말 60여명 진료...환자 처치도 빠르게 이뤄져 “밤새 전전긍긍하다 새벽부터 줄 섰는데...이젠 맘이 놓여요”

광주지역에는 2013년 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58개에 달했으나 10년 만인 지난 6월 현재 43곳으로 25.8% 급감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이...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가 부족한 탓에 광주 곳곳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는 일명 ‘오픈런’(2022년 11월 9일자 광주일보 7면)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아이들이 아파도 문을 연 심야 어린이 병원이 없어 부모들은 의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다.

광주시 남구 기독병원이 지난 1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의 문을 열었다. 지난 7월부터 2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 공식 진료를 시작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 30분~자정,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자정, 일요일·공휴일은 오전 10시~자정)은 매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이 진료한다.

이날 광주기독병원을 찾은 부모들은 ‘믿을 구석이 생겼다’고 반색했다.

“아이가 밤 중에 아파도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밤만 동동 굴렀지만, 이젠 갈 수 있는 병원이 생겨 든든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들른 개원 첫날 밤 9시께에는

기독병원 제1주차장부터 아픈 아이를 안고 차에서 내리는 보호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픈 딸을 품에 안고 차에서 내린 엄마 A씨는 차를 운전하는 남편에게 “접수하고 있을 테니까 주차하고 와”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병원으로 내달렸다.

접수처 앞은 이미 아픈 아이를 데리고 방문한 보호자 10여명이 줄지어 서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불과 3분이 지나기도 전에 접수 뿐만 아니라 진료소에서 아이의 열을 측정하고 증상확인까지 마쳤다. 그제서야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뿜고 아이를 품에서 내려둘 수 있었다.

뒤이어 도착한 환자들의 처치도 빠르게 이뤄졌다. 진료소 복도에서 있는 간호사가 환자의 증세를 파악해 소아 외래진료실로 전달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이를 바탕으로 진료를 했다.

외래진료실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전문의와 간호사는 아이를 달래며 진료를 보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또 다른 간호사가 전화상담 서비스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아이의 증세를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야간 소아환자가 많아 진료소 내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 대기실까지 부모와 아이들이 가득 차 소아환자 대기실로 이용됐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광주지역 부모들이 지난 1일 밤 9시께 광주시 남구 광주기독병원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 생후 18개월이 된 아이가 열이 많이 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방문한 박정숙(41)씨는 “지난 6월 말에는 아이가 늦은 시간 열과 함께 구토 증세를 보여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4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해서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밤새 아픈 딸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젠 늦은 시간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어린이병원이 생겨 맘이 놓인다”고 말했다.

같은 날 4살 난 아들이 아파 병원을 찾은 김문성(38·서구 화정동)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퇴근하고 집에오면 아동병원이 이미 문을 닫았거나 접수가 가득 차 환자를 더 받지 않기 일췌어서 이른 아침 아동병원 오픈런을 자주 했었다”며 “이곳도 대기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

도 1시간 이내로 아이가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했다.

이성훈 광주기독병원 의료부장은 “지난 2달 시범 운영을 한 결과 평균적으로 평일 30여명, 주말 60~7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기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불법 구금 이철우 전 5·18재단 이사장 손매소 일부 승소

유신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된 이철우(72·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목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이 목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억 34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목사는 1978년 8월 전주중앙교회에서 개최된 기독교 행사 모임 장소로 행진하던 중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됐다.

이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토대로 취한 특별조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는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해 2019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목사는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속해 수사 과정에서 폭언·폭행·고문을 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재심무죄 판결 확정 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목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정부는 이 목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 목사의 무죄 선고가 2019년 확정된 점을 비추면 단기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 목사가 기소에 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영권 인수하면 불법폐기물 처리 의무도 승계”

광주지법, 업체 소송 기각

회사 경영권을 인수했다면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도 승계했다고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상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1월 경매에서 폐기물 처리업자를 하는 B업체를 24억여원에 낙찰받아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했다.

B업체는 소유권을 넘기면서 지난 2013년 10월

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산, 제철소 등지에서 발생한 비철금속(철 이외의 모든 금속) 찌꺼기 1만 300여t의 처리를 C업체에게 위탁했다.

C업체는 이 쓰레기를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쇄산에 매립했다.

하지만 매립 후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이 발생하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을 제거하고 침출수 적정처리 및 자하수 등 오염 방지를 위한 적정조치를 취하라고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B업체에 조치명령을 했다. 결국 B업체를 인수한 A업체가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됐다.

A업체는 “B업체를 경매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인·허가승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면책”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B업체를 24억여원에 낙찰받았는데, 131억여원이 드는 조치명령을 이행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면서 “폐기물 처리 의무 등을 부담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잘 알아보고 입찰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 인수비용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은 점은 과도한 이익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 폭행” 민원 제기

광산구, 인권기관에 조사 의뢰

광주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이 사회복지사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산구는 지난 1일 발달장애인 A씨가 사회복지

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A씨 지인은 지난 7월 중순께 A씨가 다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A씨가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폭행 의혹을 받은 사회복지사 2명 모두 복지시설에서 사임했다.

광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A씨에 대한 폭행 여부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